##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06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.

발 의 자: 박용갑・이용우・조승래

한병도 • 황명선 • 정준호

박정현 · 강유정 · 문금주

황정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·경기·충청·전남·경남 등 전국 대부분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.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(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사용할 수 있는 기간)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됨.

문제는 어린이집·유치원 등 해당 기관들은 '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'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.

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어 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"소유자"에서 "차량"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계속 운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).

법률 제 호

#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 가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를"을 "어린이통학버스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	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			
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	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			
부개정법률 부칙	부개정법률 부칙			
제3조(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	제3조(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			
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)	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)			
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	①			
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				
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				
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				
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	
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	<u>.</u>			
1. 「도로교통법」 제52조에 따	1			
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				
를 하려는 경우. 다만, 이 법				
시행 전 「도로교통법」 제52				
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<u>어린</u>	어린이			
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	<u>통학버스를</u>			
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				
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	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